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7.(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일: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의안번호 제95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2. 제안설명 요지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

2027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업명: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나. 위탁기간: 2년, 2027. 1. ~ 2028. 12.

다. 위탁방법: 공공기관 위탁

라. 위탁사무 범위

-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홍보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관리
-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 근로・고용 유지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 민원 대응 및 사업 실적・성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 운영 전반

마. 수탁기관: (재)창원산업진흥원

바. 사업금액: 2,137백만원(시비)

예 산 항 목			사 업 비(천원)		세 부 내 역
			'27년	'28년	
직접비	민간사업 지원비	기 업 지원금	720,000	828,000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장려금 : 3,600천원 X 430명
		청 년 지원금	240,000	276,000	■ 청년지원금 - 인센티브 : 1,200천원 X 430명
	일 반 운 영 비	사 무 관리비	3,000	3,000	■ 회계정산 수수료 등 - 회계정산 수수료 : 3,000천원 X 2회
		회의비	600	600	■ 회의운영비 - 회의운영비 : 300천원 X 4회
	인 건 비	보 수	27,746	32,309	■ 사업수행 인건비
간 접 비			2,654	3,091	■ 사업운영지원 간접경비 - 민간사업 지원비의 약 0.28%
합 계			**994,000**	**1,143,000**	

※ 운영비 등 경비는 민간사업지원비의 3.5% 수준으로 산정

※ 연도별 세부 산출내역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 가능

<연간 지원인원 및 사업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계	'27년	'28년	'29년	'30년	비고
지원인원	**1,000**	200	230	270	300	
총사업비	**4,968**	994	1,143	1,341	1,490	※ 소요예산 산출(年 기준)
(기 업)지원금	**3,600**	720	828	972	1,080	(기업) 30만원 × 12개월
(청 년)지원금	**1,200**	240	276	324	360	(청년) 10만원 × 12개월
(수행기관)운영비	**168**	34	39	45	50	(운영비)사업비의 약 3.5%

※ 지원인원 등은 예산 반영액에 따라 변동 가능

사.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및 제17조(업무의 위탁)
-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필 요 성 (전문성 및 효율성)

- 본 사업은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비 사업 연계 추진으로 관련 운영기관과의 협업 등 복합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 공공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23~'26년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25~'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참여기업 모집・심사・선정, 지원금 지급・관리, 사업비 정산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또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속적・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청년희망금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 공공기관 위탁・대행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결과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 운영 가능성	◦ 다른 사무방식의 존재가능성 정도 : 낮음 ◦ 다른 사무방식으로 대체가능성 정도 : 낮음 - 관계기관 협업 등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많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적정 ◦ 타 부서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통합가능성) 여부 : 없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서비스로서의 중요성 정도 : 중요 ◦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의 광범위성 정도 : 중요 ◦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정도 : 적정 - 창원산업진흥원은 상시 전문인력과 자체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안정적 서비스 공급 가능 - 시는 사업 지도・점검・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을 보장

검토항목	검토결과
③ 경제적 효율성	◦ 업무담당 예산의 절감 정도 : 적정 ◦ 업무담당 공무원(인력)의 절감 정도 : 적정 - 창원산업진흥원은 상시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지식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활용으로 비용 절감,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④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필요성 정도 : 적정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정도 : 적정
⑤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위탁·대행 성과의 측정 용이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 성과의 계량적 측정 가능성 정도 : 적정 -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탁·대행 관리의 용이성 정도 : 적정 -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지도·감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검사가 용이 ◦ 위탁·대행 운영의 투명성 정도 : 적정 - 창원산업진흥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하므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음
⑦ 책임행정의 보장성	◦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보장 등 - 창원산업진흥원은 공기관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 가능 ◦ 위탁·대행기관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 결과 : 적정

자. 심의요청 사항

○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로 선정해 (재)창원산업진흥원에 2년간 위탁·대행함

차. 향후계획

○ 위탁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 2027년 본예산

○ 위수탁·대행 계약 체결 : 2027년 1월 中

○ 위수탁·대행 업무 개시 : 2027년 1월 ~ 2028년 12월

카. 기대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청년 연계로 정부 정책 시너지 효과

○ 청년 역외유출 방지 및 장기고용을 통한 숙련인력 성장 지원

4.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 본 동의안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7년 신규사업인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을 (재)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의 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 지역정착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임.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 49억 6,800만원임.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가 종료된 기업과 해당 사업의 18개월, 24개월 지원 대상 청년임.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총 36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지역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2027. 1. ~ 2030. 12. (제5대 임기)

▣ 지원대상: 1,000명 ※ ‘27년 200명 ▲‘28년 230명 ▲‘29년 270명 ▲‘30년 300명

(기업) 관내 소재 기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종료된 기업

(청년) 관내 사업장 근무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8개월, 24개월) 대상 청년

▣ 소요예산: 4,968백만원 (시비, 4년간)

▣ 사업내용: 국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사업으로 기업·청년에게 고용유지장려금·지역정착금 지원

(기업) 고용유지장려금 360만원 지원(월 30만원 × 12개월)

(청년) 지역정착금 120만원 지원(월 10만원 × 12개월)

○ 본 사업은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종료에 따른 지역 청년 고용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산업진흥원 공공위탁” 타당성 여부

○ 본 사업은 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역 청년의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속적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 이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재)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창원산업진흥원의 최근 3개년 수탁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3년 신산업 연계 (2023. 1. ~ 12.)	’24년 신산업 연계 (2024. 1. ~ 2025. 4.)	’25년 신산업 연계 (2025. 5. ~ 2026. 6.)	2026년 일경험 (2026. 1. ~ 12.)
합 계	**600,000**	**650,000**	**700,000**	**419,800**
인 건 비	46,875	60,280	64,440	20,000
운 영 비	17,975	22,680	15,300	6,170
사 업 비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교육비	490,150	537,040	588,490	367,630
간 접 비	45,000	30,000	31,770	26,000

○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창원시정연구원에 공공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와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역 청년 고용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재)창원산업진흥원은 관련 청년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공공위탁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 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액 시비로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동의안의 위탁·대행 규모는 2,137백만 원이나, 지원인원 등이 예산 반영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위탁·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예산 변동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참 고 고용노동부「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목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 및 청년에게 장려금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

▣ 지원대상

❶ **(기업)**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중견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24, '25년 중 1개년도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900만원'이상인 기업

❷ **(청년)** 채용일 기준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청년**

▣ 지원요건

❶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등

❷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대상 청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업은 1년간, 청년은 2년간 각 최대 720만원 지원

❶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❷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최대 2년간 지원

- (일반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 **창원시**
- (우대지원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창원고용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창원시 사업장 청년 규모추정

: **('24) 1,501명→ ('25년) 2,068명→ ('26.5.) 1,173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경남권역 단위로 사업장 관리, 청년 거주지는 사업 관리 기준 ×

참 고 창원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디지털, 반도체, 스마트 제조 등)기업 일경험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내용: (기업) 인건비 450만원 150만원×3개월, 멘토수당 15만원 5만원×3개월지원 (청년) 교통비 30만원 10만원×3개월, 인센티브 100만원 6개월근로유지,선착순 40명 현장맞춤형 직무교육 등 실시 ○사업기간: '23. ~ '26. 6. ○사 업 비: 1,950백만원(시비) ※ ('23년) 600 ('24년) 650 ('25년) 700 ○추진사항: 223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사업개요: 현장실습 등 일경험을 통한 청년 초기경력 형성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내용: (기업) 인건비 450만원 150만원×3개월, 멘토수당 15만원 5만원×3개월지원 (청년) 교통비 30만원 10만원×3개월, 인센티브 50만원 6개월근로유지,선착순 35명 ○사업기간: '26. 1. ~ 12. ※ 최초시행 : 2025년 ○사 업 비: 420백만원(도 56, 시 364) ○추진사항: ('25년) 40명 / ('26년 10월 기준) 62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업개요: 지역 특성에 맞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 ○지원내용: (기업) 인건비 4,320만원 180만원×24개월 (청년) 교통비 240만원 10만원×24개월, 주거지원금 720만원(해당자) 30만원×24개월, 인센티브 1,000만원(2년 근무 후, 분기별) 250만원×4회, 직무교육 등 ○사업기간: '22.~ '25.(4개 사업), '23.~ '26.(5개 사업) ○사 업 비: 16,772백만원 (국 8,164 도비 2,793 시비 5,815) ○추진사항: ('25년) 140명 / ('26년) 45명
청년내일통장	○사업개요: 창원시 거주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액 매칭하여 동일금액 적립 지원 - 월적립액 : 30만원(청년 납입금 15만원, 시 지원금 15만원) - 만기금액 : (2년) 720만원+이자, (3년) 1,080만원+이자 ○사 업 비: 1,200백만원(시비) ○추진사항: ('25년) 964명 지원 / ('26년 6월 기준) 871명 지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개요: 市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도내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내용: 월 40만원(청년 20 + 市·道 지원금 20) / 2년 만기 ※ 만기금액: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 이자 ○사 업 비: 478백만원(도비 239, 시비 239) ○추진사항: ('25년) 신규모집200명, 만기자67명 지원 / ('26. 10월 기준) 신규모집200명

5.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6. **토론 요지**: 기재 생략

7. 심사 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